

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6 . 11 . 1 .
발 의 자 : 김기래의원 외 3인

1. 주문

지방자치법 제50조,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,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 행정사무중 구립어린이집과 가로정비업무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위하여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구성위원수 : 8인
 - 위원장 : 1인
 - 간 사 : 1인
 - 위 원 : 6인
- 위원선임방법 :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- 위원회 활동범위 : 구립어린이집 및 가로정비업무 조사
- 위원회 활동기간 : 2006. 11. 16 ~ 12. 15

2. 제안이유

구립어린이집 및 가로정비업무의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심사를 하고자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.

【 관계법령 】

지방자치법 제 50조(위원회의 설치)

② 위원회는 소관의안건과 청원들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)

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 제20조의 3(특별위원회의 설치)

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(조사)

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확정한다.

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 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(위원장선임)

-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.